

의안번호	2209286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5. 8. 5.
추계번호	25B18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5,000만원 (연평균 3,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작성	150	-	-	-	-	150	30

주: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다만,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함(제1항)	재량·의무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 또는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21조의2(준공영제 관리·감독)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미대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 등은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성과이윤)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음 <table> <tr> <th>실시 기관/지자체</th> <th>내용</th> </tr> <tr> <td>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td> <td>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 스 평가 업무처리지침」 ,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함 </td> </tr> <tr> <td>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춘천), 충북(청주), 경남(창원), 제주 ※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td> <td>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¹⁾함 </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실시 기관/지자체	내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 스 평가 업무처리지침」 ,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춘천), 충북(청주), 경남(창원), 제주 ※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¹⁾함
실시 기관/지자체	내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 스 평가 업무처리지침」 ,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춘천), 충북(청주), 경남(창원), 제주 ※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¹⁾함								
2	안 제21조의2(준공영제 관리· 감독) 신설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함

※ 성과이윤 지급 대상 : 시내버스 평가 순위 40위 내 + 기본점수 850점 이상 업체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준공영제 개요

- 준공영제²⁾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 2025년 현재 준공영제는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는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에 대하여 총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음
 - － 준공영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춘천), 충북(청주), 경남(창원)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 2]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경남 (창원)
2019	2,915	1,300	1,320	1,271	733	578	911	352	—	—	—
2020	1,705	1,881	1,819	1,906	1,162	1,000	985	879	—	—	—
2021	4,561	3,672	1,946	2,181	1,221	1,051	1,045	2,274	—	510	634
2022	8,114	3,056	2,577	2,648	1,380	1,166	1,190	2,953	—	660	875
2023	8,915	2,710	2,406	2,816	1,351	1,150	1,171	2,290	141	686	883
2024	4,000	2,600	2,209	2,518	1,388	946	1,191	6,525	148	717	860

주: 2021년부터 충북(청주), 경남(창원), 2023년부터 강원(춘천)이 준공영제 도입

자료: 국토교통부

나.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작성(안 제21조의2제3항)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지침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지침」,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나,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를 아우르는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유사사례로, 국토교통부는 ‘도로분야 기준·지침 표준화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3년 1억 5천만원을 집행함

-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5,000만원(연평균 3,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작성	150	-	-	-	-	150	30

주: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